

예 산 총 칙

2014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97,012,729	14,910,382
일반회계	453,115,441	13,593,463
특별회계	43,897,288	1,316,919
공기업특별회계	34,866,190	1,045,986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8,733,577	562,007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6,132,613	483,978
기타특별회계	9,031,098	270,933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827,258	54,818
신정지구개발사업 특별회계	700,000	21,000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714,000	51,420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402,500	132,075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387,340	11,62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3년 명시이월 사업은 불임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계속비 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875,97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3,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